심 사 보 고 서

충청북도 도정 정책자문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 도정 정책자문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의안 번호	25

2022. 9. 28.(수)
정책복지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나. 제출일자 : 2022년 9월 7일

다. 회부일자 : 2022년 9월 8일

라. 상정일자 : 2022년 9월 19일

- 제403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3차 정책복지위원회

마. 주요내용

-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답변, 심사의결(원안가결)

2. 제안 설명 요지 (제안설명자 : 홍순덕 정책기획관)

가. 제안사유

○ 민선8기 출범에 따라 도정 주요 정책의 성공적인 추진과 지역현안에 대한 합리적인 해결방안 모색을 위해 도정 정책자문단의 분과위원회를 기능별로 개편하여 정비하려는 것임.

나. 주요내용

○ 도정 정책자문단 분과위원회 정비(안 제6조)

- (현행) 공공혁신분과위원회 등 11개 분과
- (개정) 일반행정분과위원회 등 10개 분과

3. 검토보고 요지 (김대진 수석전문위원)

가. 제출배경

○ 도정 주요 정책 추진과 지역현안에 대한 합리적인 해결방안 모색을 위해 도정 정책자문단의 분과위원회를 기능별로 재정비하려는 것임

나. 주요내용 검토

○ 안 제6조에서는 공공혁신분과위원회 등 11개 분과를 일반행정분과위원회 등 10개 분과로 변경하는 것으로,

- 도지사는 도정 주요정책의 입안·추진 등에 있어서 민·관 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「지방자치법」 제130조제1항[6] 및 동 조례에 따라 도정 정책자문단을 둘 수 있고,
- 이는 도정 정책자문단의 분과위원회를 기능별로 재정비하기 위한 것임

○ 더욱이 행정자치부에서는 「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 지침」[7]을 통해 기능이 유사·중복되는 위원회는 전반적으로 정비하여 위원회의 효율화를 추진하도록 하고 있는바,

- 도정 정책자문단의 분과위원회를 기능별로 개편하여 정비함으로써 도정 정책자문단 운영 및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고 판단됨.

---

6) 제130조(자문기관의 설치 등) ①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문기관(소관 사무에 대한 자문에 응하거나 협의, 심의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심의회, 위원회 등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을 설치 · 운영할 수 있다.

7) 행정자치부 2015. 9. 10 보도자료(지방자치단체 위원회 대폭 정비 추진 -회의실적 저조 위원회 폐지, 유사·중복 위원회 통폐합 등-) 참고.

- (유사·중복 위원회) 회의 실적이 있더라도 기능이 유사·중복되는 위원회는 통·폐합하되, 독자적 심의가 필요한 경우 통합 후 분과위원회로 재편
- (비효율 위원회) 유형별로 구분하여 폐지, 존속기한 설정, 협의체로 전환, 비상설화 등의 정비를 추진

다. 종합 검토의견

○ 본 조례안은「지방자치법」제130조제1항 및 동 조례에 따라 도정 정책자문단의 분과위원회를 일반행정분과위원회 등 10개 분과로 개정한 것으로, 법적·절차적으로 문제가 없음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“생략”

5. 토 론 요 지 : “생략”

6. 심 사 결 과 : “원안가결”

7. 소 수 의 견 요 지 : “없음”
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“없음”

9. 심사보고서 첨부서류

○「충청북도 도정 정책자문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
충청북도조례 제 호

충청북도 도정 정책자문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 도정 정책자문단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1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1. 일반행정분과위원회
2. 안전·소방분과위원회
3. 복지·보건·여성분과위원회
4. 경제분과위원회
5. 신성장분과위원회
6. 바이오분과위원회
7. 농·어업분과위원회
8. 문화·관광·체육분과위원회
9. 균형발전분과위원회
10. 기후환경분과위원회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6조(분과위원회의 설치 등) ① 자문단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분과위원회를 설치한다. 1. 공공혁신분과위원회 2. 재난·소방분과위원회 3. 자치경찰분과위원회 4. 복지·여성분과위원회 5. 경제분과위원회 6. 신성장분과위원회 7. 바이오분과위원회 8. 농·어업분과위원회 9. 문화·관광·체육분과위원회 10. 균형발전분과위원회 11. 환경·산림분과위원회 ② ~ ④ (생 략)	제6조(분과위원회의 설치 등) ①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. 1. 일반행정분과위원회 2. 안전·소방분과위원회 3. 복지·보건·여성분과위원회 4. 경제분과위원회 5. 신성장분과위원회 6. 바이오분과위원회 7. 농·어업분과위원회 8. 문화·관광·체육분과위원회 9. 균형발전분과위원회 10. 기후환경분과위원회 ② ~ ④ (현행과 같음)

관련법령 발췌

□ 지방자치법

제130조(자문기관의 설치 등) ①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문기관(소관 사무에 대한 자문에 응하거나 협의, 심의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심의회, 위원회 등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을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② ~ ⑤ (생략)

□ 지방자치법 시행령

제78조(자문기관의 설치요건)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법 제130조제1항에 따른 자문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.

1. 업무 특성상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
2. 업무의 성질상 다양한 이해관계의 조정 등 특히 신중한 절차를 거쳐 처리할 필요가 있을 것

제79조(자문기관의 구성) ① 법 제130조제1항에 따른 자문기관은 설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는 데 필요한 인원으로 구성한다.

② 법 제130조제1항에 따른 자문기관의 위원은 비상임으로 하고,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.

제80조(자문기관의 존속기한)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30조제1항에 따른 자문기관을 설치할 때에 계속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자문기관의 존속기한을 조례에 분명히 밝혀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은 5년의 범위에서 자문기관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한다.